<<청소년 처벌 강화 찬성>>

반대근거

1. 환경탓🡪 가정이나 학교에서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
2. 법을 몰라서🡪 교화 필요
3. 범죄자 낙인, 소년원에서 더 강력한 범죄자 될 수 있음
4.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 이투데이 (etoday.co.kr)](https://www.etoday.co.kr/news/view/1901660) – 정부: 반대
5.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잇는 나이가 아니다. + 그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6. 소년 범죄의 책임은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7. 처벌강화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8. 처벌강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한다.
9. UN아동권리 협약 위배
10. 청소년은 쉽게 교화 가능
11. 반론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교화의 목적이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그렇다. 교화의 목적이다. 다음번에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여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12. 청소년은 아직 백지의 상태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환경이나 배경까지 고려해봐야한다. <-> 그러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청소년이기에 미리 바로잡아 놓아야 미래에 더 큰 화를 방지할 수 있다.
13.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큰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성인들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데 청소년이라고 달라질건 없다. <-> 비록 큰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더 높아진 처벌 수위에 범죄를 생각하다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시도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강도가 성인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같은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고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삭감해주어야 하나? 같은 크기의 죗값을 치루는 것이 마땅하고 평등한 것이다.

입론 시작 시) ["소년법 폐지·개정" 찬성 vs 반대 토론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https://m.blog.naver.com/sun32ys/221938650580) 요렇게 시작하면 편함

소년법의 정의)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   
법률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소년형사사건)

법률 범인이 소년인 경우의 형사 사건. 우리나라의 소년법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 처분을 하며, 사형ㆍ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완화한다.

일반 형사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적절한 양형을 통해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가해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의 항고는 불가능하고, 해당 소년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소년의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비행사실, 소년의 성행, 환경, 보호자의 보호력 등 소년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로 끝나게 됩니다**. 결과에 따른 집행 또한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보호사건으로 송치  
  하였다는 기록만 남고 **소위 말하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범죄의 형태, 죄질이 어떠하든 가해자가 '소년(소년법 규정,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범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고, 소년'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던 인천여아살인사건의 가해 학생의 경우  
아무리 소년법이 규정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히 흉악하기 때문에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3670) [少年法] (두산백과)

입론팀 따로 / 반론팀 따로

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 팀에서는 n가지 논거를 들어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1. 환경탓

환경이 절대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은 모두 강도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규칙을 세우고자 법을 만들고 모두가 그것을 따르기로 했고 법을 어길시에는 공평하게 벌을 받기로 정했다. 법을 어긴 정도가 같다면 나이,직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죄를 환경의 탓으로 정당화 시킬시, 자칫 나도 해볼까?하는 식으로 또 다른 범죄행위를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

1. 사회적 낙인 -> 기회 주어야함.

요즘에는 소년범죄가 널리 알려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에게 약한 처벌을 가하고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 기회는 갱생의 기회가 아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쥐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되어 그 칼날이 또 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관대를 베풀기 전에 피해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한다.

1. 본래 법제도 실효성 없음.

본래의 법제도의 시행 결과로 최근 소년강력범죄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해 범죄를 쉽게 보지 못하게 해야하고, 지금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게 되어 후에 그들이 성장하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청소년법을 강화하여 미리부터 예방해야한다.

4. 소년원에서 더 강력한 범죄자

--> 일반 교도소도 아닌 소년원에서는 교정교육이 목적이므로 신빙성이 없음.

5. 의사결정 나이 X --> 책임 지울 수 없음

-->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건 인지하지만,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실제 미국에서는 부모책임법이 있어서 주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사회봉사, 교육, 구금 등을 시행하고있다.

6. 처벌 강화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음

-->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심을 두고있음. 한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흉악범죄는 2006년에 비해 약 2배 상승했음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 않을 수가 있더라도 처벌 강화로 인한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음, 즉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함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도 있지만 이후에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교정임.

+ 낙인효과를 줄 수 있음

7. 처벌강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함

--> 성인의 범죄 폭력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 폭력화 경향은 점차 증가--> 성인은 범죄 예방이 잘 되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재범률 증가 중 [n번방·무면허운전 살인…10년째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 머니투데이 (mt.co.kr)](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614053393908)

8. 청소년은 쉽게 교화 가능

--> 소년법에는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따라주지 않음 (통계자료 ㅇ)

9. 몰라서 범죄를 저지름 --> 오히려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소년법의 특성을 알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 무지에 의함 절대 xx

입론팀 질문 들어올거)

1. 소년법은 애초 교화를 ‘목적’으로 함

찾아봐야할)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중범죄 🡪 비율이 5%미만

나머지 95% 🡪 생계를 위한 범죄

반대팀 입장) 애초 비율이

근데 이걸보고 생각한게 그래서 결론은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되, 1.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제도를 만든다